

제430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2월16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에 대한 공청회
3.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및 필수어업용 기자재 지원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에 대한 공청회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2)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1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2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21. 녹색해운향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4)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2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26.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27.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59)
2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89)
29.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3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0)
3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3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상정된 안건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3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에 대한 공청회 3
3.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및 필수어업용 기자재 지원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에 대한 공청회 13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20
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21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23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23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23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2) 23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 28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 28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 28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 28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 28
1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37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43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4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43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43
2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44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53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5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53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53
2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53
2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54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57
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4)	58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60
2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60
26.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65

(10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한 공청회와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소위원장 조경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정부가 제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과 주철현 의원,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수산물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에 대한 공청회

(10시04분)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전에 대하여는 네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이십니다.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십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이십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남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실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김남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획실적 보고 등에 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진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금어기·금지체장 준수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00만t을 하회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고수온 등 기후변화 이중고로 기존에 어획되어 오던 살오징어, 명태 등이 급감하고 방어, 삼치, 정어리 등 새로운 어종의 분포가 우세하는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어업환경 변화로 인해 어업인들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유연한 어업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어업 현실을 극복하고 선진화된 어업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에 연근해어업 선진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 발의되어 오늘 입법공청회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과 발전 방향을 담은 법률안을 만들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을 여러 전문가님 그리고 농해수위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오늘 법률안에 대한 향후 어획실적 보고의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태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과 사회교대)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1999년도부터 4개 어종, 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관련 국내 법령은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EEZ 어업법에 따라 TAC 설정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법 외에 행정규칙, 지침 등을 통해서 TAC 시행계획 그리고 판매장소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TAC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등 대부분의 어업 선진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개 어종에 TAC를 도입한 이후 2025년 현재 18개 어종,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전체 연근해 어획량 대비 약 40%를 TAC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근해를 포함한 어선 4만여 척 중에 3500여 척이 TAC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근해어업 생산량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종과 생산비율이 높은 근해업종은 TAC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TAC는 정확한 물량을 배정하고 소진되는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 판매장소에서 양륙 및 위판을 하도록 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정 판매장소는 전국 132개소이며 지정 판매장소에서 TAC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125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 규모는 2011년 공단 설립 당시 70명에서 25년 기준으로 해서 12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TAC 모니터링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수산자원조사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배분된 참여 어선의 위판 물량을 파악하고 ABC 등 자원평가에 필요한 어종별 생물학적 체장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수산자원조사관이 어종·업종별 상이한 위판 일정에 맞게 능동적으로 근로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판장 현장조사 시 일자별 위판 자료 수집, 어획량 산정을 위한 위판 상자별 중량 조사, 대상 어종의 자원평가에 필요한 생물학적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조사 시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국립수산물과학원 및 해양생물자원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협조하고 어업인들이 어획한 어린 물고기, 금어기·금지체장 위반사항 발생 시 폐기 등 현장 제도 업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TAC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제도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TAC 정책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어업규제 해소 및 육상 양륙 단계에서 어획량을 관리하는 TAC 제도로의 전환은 국제규범에 준하는 선진 어업관리체계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를 TAC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 TAC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TAC에 참여한 어선은 반드시 지정판매장소를 통해 양륙하거나 위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어획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정판매장소에만 상주하는 조사원의 업무 특성상 지정판매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되는 불법유통 수산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 체계가 부족하여 어획량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어획 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부재하여 개별 참여 어선이 다른 어선의 어획 정보를 알지 못해 TAC 배분량 상호 전배 등 효율적인 TAC 소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의 사각지대로 TAC 물량 이외에 근해안강망, 쌍끌이 등 트롤어선 등에서 어획되는 정상 판매되지 않는 물량, 즉 멸치, 까나리, 어린 치어 등 양식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물량이 상당량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업인들은 정해진 물량을 사전에 계약하여 실제 유통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혈값에 판매되고 있어 어업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지 못한 채 어린 치자어 등 자원의 남획만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사료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매매 물량에 대한 정확한 유통 규모 등을 파악해야 해당 어종의 정확한 자원량 파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어획보고 체계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되는 계통 및 비계통 판매의 물량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상황별 대책 수립을 통해 유연한 어업자원 관리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 시 전 어선 TAC 적용은 불가분의 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AC 제도는 주요 어획되는 상위 품종을 대상으로 근해어선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면 향후 1~5t 미만의 연안 소형어선 등 새로이 참여되는 업종과 어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업인 스스로 정확한 어획보고를 위해 법 시행과 그다음 어업 선진화 추진 시기에 맞추어 시범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스템에서 어업인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발굴·개선하고 전 참여 어선이 100% 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고 활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기술한 대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단 수산자원조사원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사원은 기존의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그중 양륙항에 배치된 어업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양륙항에 입항하는 어선에 대한 불법유통 등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부족한 어업감독관의 역할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을 통해 TAC 제도는 기존의 어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노령 어업인들에게는 생계 경비를 지원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를 통해 배정된 TAC 물량을 사고팔 수 있는 ITQ 제도로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고수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해 기존에 잡히지 않던 어종 및 의도하지 않은 부수어획의 양륙을 허용하여 수산물 고소득화를 도모하는 등 정확한 어획보고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어업인이 살기 좋은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도훈 감사합니다.

국립부경대학교 김도훈입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진술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학계에서는 거의 30년 동안 이 법을 요구를 해 왔고 그 이유는 1997년도에 강제위판제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 어획량 파악 등이 굉장히 어려웠고 어획량 파악이 어려운 그 결과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평가, TAC 정책 그리고 다른 수산행정에도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도 계속 어획량 파악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제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2022년도에 여기 계

신 조승환 위원님께서 당시에 장관님이실 때 이 안을 만드셨고 저도 그때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올해까지 와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은 저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의 수산자원 관리 또 TAC 자원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획량 파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97년도 이후 사매가 허용이 되면서 어획량 파악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지금 통계청 자료를 봐도 오징어의 경우에 사매로 유통되는 것은 딱 1%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실과는 괴리된 정보가 국가통계에 잡히고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완전한 어획량 통계를 가지고 수산자원 관리를 평가한다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TAC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앞으로 TAC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획량 파악을 위한 법이 선행적으로 통과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UU 어업에 대한 근절 효과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제가 진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외적인 나라 없이 IUU 어업에 대한 근절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일본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법을 만들었고 노르웨이, 미국, EU 할 것 없이 IUU 어업을 근절하고 있고 IUU 어업 지정을 받는 국가는 수산물을 수출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과거에 원양에서 두 번이나 불법어업 예비 지정국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원양어업법까지 만들어서 지금 잘 대응을 해서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도 우리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근해어업에도 이러한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확실한 선진화된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어선 안전사고 저감 효과입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선에 위성 AIS 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어선이 어디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어떤 어선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어선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규범 이행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그다음에 EU에 우리가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산물이력제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 수산물이 어디서 잡혔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그래서 EU나 미국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어획량이 초기 생산 단계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유통 단계에도 꼬리가 달려서 파악이 되어야 우리가 안정적인 수산물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기반을 만드는 것도 저는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기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상풍력과의 갈등이 지금 많은데 해상풍력을 할 때 입지 설정이라든지 어업인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선들이 어디서 어떻게 어획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획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역별로 실시간으로

로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해상풍력이 건설이 될 때에도 가장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곳에 해상풍력을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해상풍력의 설치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병목으로 잡혀 있던 어획량 조사,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이 지금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이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강력하게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철 안녕하십니까?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다에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온 어민들을 대표해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왔습니다.

어민들은 늘 파도와 바람 앞에 서 있습니다. 날씨를 탓할 수도, 바다를 원망할 수도 없이 그저 묵묵히 그날의 조업을 준비하며 가족의 생계와 어촌의 내일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오랜만에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115년 된 낡은 법을 고친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어업을 미래산업으로 바꾼다는 말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 앞에서 늘 죄인처럼 위축돼 있던 어민들의 마음을 조금은 따뜻하게 풀어 주는 말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며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출항 전부터 입항 후까지 수많은 규정과 단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혹시라도 또 단속당하지 않을까 늘 불안 속에 살아야 했던 현실은 어민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대에 맞는 법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는 이번 방향은 이제 어민들에게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이제는 숨을 쉬어도 되겠구나 하는 작지만 소중한 희망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며 TAC 기반의 자원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사실 어민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바다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이 살아야 어민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도 바로 우리 어민들입니다. 바다의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는 사람 또한 바다의, 현장의 어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법이 진정 미래를 위한 법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적 대안이 함께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현재 어업관리단 직원은 약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지자체 공무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많습니다. 이분들이 바다에서 단속하는 역할은 EEZ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 한정하고 국내 연근해어업 질서는 사실 항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전국의 항포구에 상시감독관을 배치한다면 입·출항 확인, 어획량 점검, 전자보고 지원,

양륙·신고 절차 검증, 불법사항 예방 등 이 모든 절차가 항구에서 투명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독관이 현장에서 도와준다면 정확한 양륙 데이터가 쌓여 TAC와 자원관리는 더욱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선진 어업관리 시스템과 가장 잘 부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가 어업인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자원관리의 주체로 세우려는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합니다. 힘든 조업에서 물러나 계시지만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 감척 후에도 여전히 지역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분들께 명예 TAC 요원의 역할을 부여한다면 그분들은 항구에서 어획량 기록 지원, 전자보고 입력 보조, 양륙 검증 참여, TAC 이행 협력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며 어촌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정부 정책 기조와도 아주 잘 맞습니다.

우리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이 제도가 추진된다면 선발·교육·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정부와 함께 한국형 자원관리 모델을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민은 이 법의 취지, 즉 바다를 회복시키자는 정부의 방향성에 기꺼이 동의하고 지지하는 이유는 바다가 살아야 우리 어민들이 삽니다. 어업이 무너지면 어촌이 무너지고 어촌이 사라지면 바다를 지킬 사람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바다에서 하루하루 삶을 이어 온 어민들을 대표해……

죄송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천천히 하세요.

○진술인 김영철 그만큼 책임과 의무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완성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항구 기반 관리 시스템, 명예 TAC 요원 제도 그리고 어민과 정부가 함께 만드는 자원관리 체계가 갖춰질 때 이 법은 진정한 의미의 살아 있는 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민은 바다를 지키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 어민도 흔들림 없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기성 안녕하십니까?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김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에 대한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해수부가 발표한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은 2028년까지 모든 연근해어선에 대한 TAC 확대 적용과 한국형 어획증명제도의 도입 그리고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제정되고 제안 이유와 같이 어업 현장에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산출량 중심의 자원관리 제도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업인들의 고령화와 소규모 어선과 관련된 시행상의 안정화 기간과 절차에 대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연근해어선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 전채실적 및 양륙실적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화 비율이 높은 어업인들이 제정안에 따라 단계별로 신설되는 규제를 한꺼번에 모두 수용하기가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현실적으로 위판이 어려운 소규모 1인 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어획실적보고부터 양륙보고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어업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총톤수 2t 미만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실적 및 전채실적의 보고, 비지정 양륙장소에서 양륙 금지, 양륙실적의 보고 규정을 법 시행 후 일정 기간 적용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 유예기간 동안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 적용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법 시행 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총톤수 2t 미만 어선의 생산량은 2022~2024년까지 연근해어업 생산량 평균 89만t 중 약 5만 9000t으로 추정되며 이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의 6.5% 수준으로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기준 출입항신고 어선 중 2t 미만 어선 대부분 1인 조업으로 신고되었고 1인 조업 어선의 경우 조업과 동시에 어획보고, 양륙보고 등 일련의 과정을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하므로 3년 정도의 적용 유예기간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소규모 어선에 대해 보고의무 등을 유예하더라도 위판실적, 양륙실적 등을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소규모어가직불금이나 조건불리지역직불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면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좋은 유인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륙보고와 관련하여 TAC 제도의 전면 확대 정책에 따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정확한 어획실적 보고 관리는 물론 불법 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해 수협 위판장을 이용할 경우 수협 위판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어업인의 양륙실적 보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판장에서 판매하는 어획물의 경우 정확한 수치 확인이 가능하여 어업인들이 별도로 양륙실적 파악을 위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양륙실적을 위판실적으로 같음할 수 있도록 하면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위 법령 제정 시 상기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을 통하여 정부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선진화가 실현되어 다시 한번 풍요롭고 활기찬 어업 현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수협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이 어업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님께서 장관 하시면서 만드신 내용이어서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말씀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간단히 코멘트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법 자체가 TAC를 확대한 다라는 의미에서 너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과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산업법상 계속 무슨 문제만 생기면 새로운 규제, 문제만 생기면 새로운 규제, 새로운 규제, 심지어 이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아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잡지 마라, 계속 그런 규제만 만들어 오면서 결국 수산업법을 완전히 누더기법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일들에서 수산업 체계 자체를 우리가 좀 바꿔 보자.

그러니까 전제는 TAC를 통해서 수산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 물론 다 없앨 수는 없겠지요. 모든 규제를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극단적으로 연근해 구분까지도 없애자. 연근해 구분까지도 없애고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어구·어법에 대한 이런 규제를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 자체는 TAC를 통해서 우리 수산과 관련돼 있는 모든 규제를 다 없애자라는 취지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 대표님, 1인 조업 선박이 수협 위판장 이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가 됩니까?

○**진술인 김기성**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위판장 자체가 많지 않아서 아마 저희 쪽에는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양륙보고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획보고나 양륙보고에 대해서 어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여쭙볼게요.

김남일 진술인, 지금 이 연근해어업 발전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하고 예전에 조금 있던 내용을 발전시킨 취지가 있잖아요.

○**진술인 김남일** 예.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그러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입법되면 수산자원관리법은 손봐야 될 내용은 없나요?

○**진술인 김남일** 제가 알기로는 입법과정 중에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의 개정사항이라든지 중첩되는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그건 부칙에서 좀 조정하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진술인 김남일** 예, 맞습니다.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도훈 진술인께서 어획증명제도의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양포유류법(MMPA) 관련된 내용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동등성 평가 정도 수준까지도 뒷받침이 됩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입법이 돼야 되나요?

○진술인 김도훈 제가 알기로는 동등성 입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그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

○진술인 김도훈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김영철 진술인께서 지금 전국 항포구에 상시감독관 상시 배치를 희망하셨고 명예 TAC 요원 제도 운영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 법의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가능한가요?

○진술인 김영철 없어도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그래요?

○진술인 김영철 예.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좋아요. 그것은 해수부가 또 점검하실 테니까.

그다음, 김기성 진술인께서 시행 과정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어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톤수 2t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비지정 양륙장소에서의 양륙 금지, 양륙실적의 보고 이 부분을 일정 기간 유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저도 유예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유예를 해 놓으면 그 유예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법 적용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왕왕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진술인 김기성 일단은 1인 조업선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보고장치가 새로 장착돼야 되는 게 2000~3000척 정도로 알고 있고 아까 조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인 조업선들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자가나 아니면 식당이나 위판장으로 오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 유통 경로 비율하고 어종하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일정 기간만 있으면 유통 파악하고 절차를 해소하고 저희 쪽에서 협의해서 정한다 그러면 이삼 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제도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이삼 년?

○진술인 김기성 예.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이 부분은 유예기간을 더 두게 된다면 얼마를 뒤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지만 그 유예기간 내에 소위 유예되는 어업인들 이분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수협에서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술인 김기성 알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50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필수수산물 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03) 및 필수어업용 기자재 지원법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에 대한 공청회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필수수산물 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우리 소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진술인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한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박수봉 부경대학교 교수입니다.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진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봉주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이봉주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 이봉주입니다.

저는 양식사료를 전공했고 관련 분야에서 20여 년간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수산 질병과 관련돼 있는 수산생물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업은 국가 식량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 증가와 함께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공급망 교란으로 인해 어업 경영의 기반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수산물 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본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특히 어업 경영에 있어서 사료, 에너지, 동물용의약품과 같은 필수수산물 자재는 어업인이 자체적으로 가격 변동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운 핵심 투입 요소입니다. 이들 자재의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불안은 곧바로 생산 위축과 경영 포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공급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도 수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다만 필수수산물 자재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는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질병 발생 시 투약비, 방역비, 살처분 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수수산물자재 지원과 질병 대응 지원이 중첩될 경우 동일 의약품에 대해 사전적 가격 보전과 사후적 방역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정 중복, 재정 누수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법안 같은 경우에는 목적과 방향성이 상이하긴 하지만 지원의 적용 범위와 우선 적용 법령을 명확히 구분하는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료와 관련하여 사료관리법은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에 대한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사료는 법적 사료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료를 만약에 필수수산물자재법에 자재로 포함을 시킬 경우 정부에서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이 정책사업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필수수산물자재법에서는 사료의 범위를 사료관리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 해당되는 사료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을 하고 생사료는 제외하는 것이 정책적, 법·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수산물자재의 세부 품목과 지원 기준은 산업·기술·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학계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안이 어업 경영 안정화와 안정적 수산물 공급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봉 부경대학교 교수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수봉 안녕하십니까?

국립부경대학교 박수봉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농해수위 전문위원님, 보좌관님, 비서관님들과 필수어업용기자재의 지원에 관한 법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기후변화와 경영 비용 급등이라는 전례 없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다는 더 이상 무한한 자원의 보고가 아니며 어업인은 생계를 위협받는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에 저는 본 법안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해수온 상승과 해양 환경 변화는 어종의 변화를 야기하고 잡는 어업의 어획량 감소와 기르는 어업의 대량 폐사를 반복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인의 노력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재난 수준의 위기이며 어업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법률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재 어업 관련 법률 체계는 규제와 기반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급변하는 시장가격 변동과 경영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법률들은 질서 유지, 기본 방향, 시설 구축에는 유효하지만 현재 어업인이 직면한

고물가·고비용 경영 위기를 해결하는 경영 안전망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어업용기자재 및 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규정한 본 법안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본 법안의 실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업용 자재는 어업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성이 강하거나 교체가 잦은 물품, 예를 들어 어망, 로프, 미끼, 사료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어업용 기자재라고 하는 것은 어업 활동을 보조하고 효율을 높이는 내구성이 있는 기계, 장비, 설비류, 예를 들어 양망기, 어군탐지기, 엔진, 통신장비 등을 이야기하며 여기 계신 조승환 의원님께서 지난해 발의하신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서 정의한 수산기자재의 일부입니다.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 법안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을 좁은 의미의 기계, 장비로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가 경영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유류, 전기와 같은 에너지와 어구, 미끼와 같은 소모성 자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필수어업용기자재는 어업 생산에 필수적인 자재, 에너지 개념으로 해석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종합적 관리 체계 구축, 제6조에 필수어업용기자재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에 구입비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자재의 정의와 지원 범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본 법안 제2조 2호는 필수어업용기자재를 어업에 꼭 필요한 기자재로 정의하고 심의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통상적으로 기자재는 기계와 장비를 의미하는 반면 현재 어업인이 가격 급등으로 고통받는 품목은 유류, 사료, 어망 등 소모성 자재입니다. 법정 용어의 협의 해석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품목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률의 제2조 2호와 같이 필수수산자재의 범위에 수산업용 유류 및 전기, 미끼, 동물의약품, 종자, 사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지원 발동 기준의 모호성과 예측 가능성 부재입니다.

본 법안에서는 지원 시기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위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상승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예산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원 시기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큼니다.

이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안정화 장치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주철현 의원님 법안에서 나왔듯이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과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차액의 일정 비율, 예를 들면 70% 이상을 지원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산정 공식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복 금지 조항과 기존 보조금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본 법안 제10조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들은 면세유나 일부 지자체의 기자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 조항이 경직되게 적용될 경우 본 법안에 따른 가격 폭등분 차액 보전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시적인 보조금 지원과 본 법안에 따른 가격 급등 시의 긴급 차액 보전은 별개의 지원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본 법안의 내용은 위기 시 리스크 관리 성격임을 분명히 하여 중복 지원 논란을 해소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어가 경영의 안전판을 확보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경영비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을 통해 생산 원가 상승분을 국가가 분담하면 어업인은 조업을 중단하지 않고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국민 밥상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 식량안보 및 자급률을 지키는 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업인의 구매력이 회복되면 위축되었던 어업용 기자재 및 자재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은 단순히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법안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공급망 불안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 어업이라는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 주는 최소한의 평형수와 같습니다.

법안의 발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 농해수위 전문위원님, 보좌관님, 비서관님과 해수부 담당자님, 많은 전문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기준을 담아서 우리나라 어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박수봉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동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고동훈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제가 초대를 받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후위기와 함께 높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어업인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필수수산물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으로 우리 어업인들한테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법률안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시키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진술인 두 분과 거의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 법률안의 발의 배경과 중요성, 에너지 가격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 그리고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고려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초기에 많은 발전 단가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한 바 있고 이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으로 작용을 해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의 불안과 함께 국제유가 가격 변동성 및 불확실성,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 및 송배전 설비 투자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서 에너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경영 비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수수산물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이유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2023년에 우리 어가 부채가 약 6650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고 이게 1990년대 이후부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산자원에서 바다에 고기는 나지 않아서, 고기를 잡아야 돈을 버는데 그것도 지금 못 되는 상태고 그러면 비용이라도 줄여 가지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치솟아서 비용마저도 비싼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업인들이 이런 경우에는 빚을 내서 조업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온실가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어업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약 284만t 수준으로 이는 농업 및 임업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실가스도 대비를 해야 되고 어업인의 조업 상황과 경영 악화 상황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2025년 4월 7일자로 발의된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그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어업인들의 필수적인 수산자재 및 에너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불확실성이 높은 에너지 급등에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고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시기적절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이 어떤 수준이냐 하면 연근해어업의 문제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유류비 증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연근해어업이 어렵다라는 게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류비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원정책이 면세유라고 한다면 면세유가 도움이 된다는 건 거의 일반화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유류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어업활동을 계속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료비가 증가하면 어업을 지속하지 않겠다고 하신 부분들이 1위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몇백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조사 응답자 중 거의 63.6%가 유류비가 올라가면 더 이상 조업하지 않겠다, 이제 일 그만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법률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기적절성이 높고, 주유소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이제 1리터당 거의 1600원 넘어가지 않습니까? 면세유라고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면세유 또한 굉장히 유류비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국회가 나서서 이런 법률안을 토대로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표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해서 고려사항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 용어의 정의를 잠시 보면 이 법률안 제2조에서,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에서 어업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어업인에 대한 정의는 결국 이 법률안이 누구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책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서는 이걸 어업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법률안이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업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인으로 정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2호에는 수산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의 정의를 따라 가지고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니까 이 법률안에 대한 정책 대상을 수산인으로 해도, 그래서 정책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안의 취지 자체가 양식이나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인은 나중에 행정공무원들이나 해수부에서 정책 대상을 국한시키는 법률상의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법 취지하고 안 맞게. 원래 전체 수산인을 대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어업인만 너무 국한시켜 버리면 법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취지하고 약간 어긋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산인으로 명시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3조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수산자재의 가격 폭등에 대비하여 어업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공통사항을 규정해 놔습니다.

이렇게 공통사항을 규정해 놓으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일이 중복이 될 수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하위법령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중앙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방정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업무를 분리시키는 하위법령을 만들거나 지침이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5조 2항에는 이 종합계획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항목으로는 다양한 8개의 항목이 존재를 하지만 이 부분에는 실태조사라는 항목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필수수산자재가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이 지금 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고동훈 전문연구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진술인 진술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철현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동훈 연구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업인을 수산인으로 바꾸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련 규정이나 법에 봐도 수산인을 등록하는 시스템이나 명부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어업인은 ‘등록 어업인’ 이

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산인으로 확대하게 되면 수산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력이 소모가 되고 불확실해져요.

그러기도 하고 수산인으로 하게 되면 수산물을 가공하는 사람도 수산인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원하는 건…… 일반 제조업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게 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물이라고 해서 필수수산자재 지원의 대상이 된다면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업인으로 바꿨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달 27일경 국회를 통과한 필수농자재지원법도 이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대부분 어업인으로만 돼 있는데 그 경영정보 등록 어업인 외에 어업경영정보 등록 어업법인을 추가해서 확대하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 수산인으로 바꾸지 말고,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고동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고려를 하는 부분은, 참 법률이라는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현실에 적용이 된다면 나중에 이 법률안을 가지고 해수부나 이런 데에서 행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저희가 어업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업인의 조건이 있습니다. 60일 이상을 바다에 나가야 되고 연 120만 원 이상을 벌어야 된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어업인들만 지원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수산인이 너무 개념이 모호하고 너무 방대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업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업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부분은 하위법령을 만들 때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지금 해수부 누가 나와 있지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양영진 수산정책관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지금 이봉주 교수님 진술 내용도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또 부경대 박수봉 교수님도 지원 범위 및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세부적인 항목 설정을 전문가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고동훈 전문연구원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해수부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해서 소위 위원님들에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부수산정책관 양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차관은 오늘 국무회의 참석차 일시적으로 김재철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4.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3)

(11시16분)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의사일정 제4항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자료 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국제 규제에 대한 해운산업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자본금 상향을 통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에 따른 안정적인 자본금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까지 회사채 발행이 가능하므로 법정자본금이 5조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되게 되면 40조 원 이상의 금융 여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에 납입된 자본금은 3조 1339억 원으로 1조 8661억 원의 추가 납부가 가능하며 실제 자본금 출자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 당국과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법정자본금의 확대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 기관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회사채 발행한도가 약 19조 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정자본금 확대 필요성이 낮으므로 현 법정자본금을 확충한 이후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정책금융기관의 친환경 선박 건조 등에 대한 선박금융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재정 당국이 납입자본금을 법정자본금 수준까지 확충한 이후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재정 당국과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해운협회에서 이것 노후 선박하고 친환경

경 선박을 증설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다, 이 내용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대리 윤준병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준병 위원, 조경태 소위원장과 사회교대)

○소위원장 조경태 윤준병 위원님 감사합니다.

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1시1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승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8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1차 법안심사소위 후 같은 해 11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1월 27일 2차 법안소위를 실시하였습니다.

2차 소위에서는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2차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추후 심사하시기로 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수정사항은 자료 수정의견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소위 심사 관련 표를 보시면 어선 및 항행설비를 제외할 경우 어선 기자재 산업의 주요 부분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기자재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섬 등 원거리 지역에서 고장 발생 시 지원체계가 미흡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조직 및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13페이지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동 법률은 제정법률로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과 스마트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산기자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기자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승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이견이 해소된 걸로 파악돼서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설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하역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가고.

지금 11조에 임대사업자 부분이 있는데 조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 및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임대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하는 사람이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아 사용하도록 돼 있다.

‘임대료를 받아 사용한다’ 이 말이 들어가는 게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그러면 지금 이 법의 구조상 지자체가 임대사업자가 되고 그다음에 단위수협이 위탁관리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어민이 임차인이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만 할 수 있다 이래 버리면 지자체에서 재원이 없고 별도 그게 없으니 완전 지자체의 재량에만 맡겨지는데 이게 외곽 지역이나 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단위수협에서, 어쩌면 단위수협보다 더 낮은 어촌계면 어촌계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임차인한테 돈을,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 돈을 줄 수 있는 근거로서 이 조문을 두는 게 저는 맞다라는 게 지금 사실 해수부하고 합의가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아’라는 조문은 다시 살려 주는 게 어떨지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임대료가 마치 임대인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구를 조금 수정해서 그 취지는 저희들이 수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임대료는 저는 넣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조문상으로도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지금 이유를 보면 ‘임대료는 임대계약의 주체인 임대사업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법률관계의 혼란 방지를 위해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단위수협, 그러니까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임대료를 받아’를 살려 두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재원의 근거로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전문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사업자가 받는 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법안 해석상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피동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받아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될 경우에는 임대계약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게 임대사업자가 목적물을 인도하고 임차인, 그러니까 수산인이 임차료를 임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같이 다른 해석을 하게 돼 버리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걸 본 겁니다. 그러면 수산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사업자와 수탁기관의 계약만으로 수산인이 임차료는 수탁기관에 주고 그다음에 임대계약 체결 자체는 임대사업자하고 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서, 해석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지방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준병 위원** 위원장님, 그런 우려 때문이라면 이 문구를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이렇게 피동적으로 뭔가 다리를 건너도록 할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니만큼 오히려 ‘지원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중간에 매개로 해서 대행시키거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넘을 수 있어서 문구는 그렇게 조정하시면……

○**조승환 위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이 법안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런데 그 세 번째 부분은, 사실 수산기자재 위탁 관리체계는 농진청 구조나 이런 걸 봐 가지고 좀 더, 농기구센터 이런 거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어떻게 대입시켜서…… 수산기자재들이 임대사업이 돼서 내려갔는데 그게 어떻게 잘 관리되고 유지보수가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반드시 추가적으로도 계속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걸 해수부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9)

7.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2)

8.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6)

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2)

(11시27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4건의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자료 67페이지입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심사경과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27일 저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식업의 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여 전체회의에서도 그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소위에서는 유사한 취지인 지금 심사하고 계시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추후 신속히 심사하기로 하신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따르는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포함하여 양식어업인 등이 추가적인 행정절차 없이 양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농지전용신고, 용도변경 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포함하도록 의결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취지인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인허가 의제사항도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위에서 의결하신 제49조제2호의2에 이전 의결 내용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사용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사항을 모두 의제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양수산부도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일 전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정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심사하실 때도 시행일을 맞춰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종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된 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된 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그 법률의 시행일과 일치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양식업 허가 인허가 의제 대상에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75페이지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다음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의원안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

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필요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안은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양식어가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촉진 등을 도모하고 해양수산부의 양식업자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책적 동력 및 예산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현행법에서도 양식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하여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현행 양식산업발전법 등 규정으로도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도 양식장의 소수력발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실익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안은 양식업권의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이전·분할하기 위하여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 입법취지는 양식업이 상대방의 자산, 신용 등까지도 공유 관계에서 중요시하고 공유자 일방이 임의로 지분을 처분하여 새로운 사람이 공유 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양식업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유자 사이의 개별적인 재산권 보장과 현행법이 공유지분 처분을 제한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지분 처분 거부 사유인 개별 재산상 손해 등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으로 경남 하동군 수협은 개정안에 따라 권리자의 재산 활용성을 높이고 원활한 금융거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충남 태안군 및 전북 부안군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유자와 해당 지분을 인수한 제3자의 원활한 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양식업권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다른 공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식업권 지분 이전·분할에 대한 동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 공유자가 지분 이전·분할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분쟁 조정 관련 절

차를 사전적으로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양식업 운영에 기여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수산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며 시군구에 두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과 수협 조합장 및 어촌계장 등으로 구성되어 재산권 분쟁 조정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미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는 수산조정위원회가 공익적 행정 분쟁에 대한 심의는 가능하지만 양식장 이전·분할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이며 재산권 거래에 해당하므로 개인 간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양식업권 공유지분의 이전·분할 동의 요청 거부 금지 및 지분 이전·분할 관련 수산조정위원회 조정 관련해서는 현행 양식 면허제도상 양식업권 지분을 가진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본인의 지분 이전이 불가능하나 개정안에 공유지분 처분을 거부하는 사유가 ‘재산상의 손해 등 정당한 사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산조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 목적으로 공익을 위한 양식업 분쟁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사인의 재산권에 대한 이전·분할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병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저도 동의하는데요, 공유자가 불가피하게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 잡힐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동의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지분을 인수하게 의무조항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처분 동의 안 하려면 자기들이 인수해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타협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마치 합의처럼, 합의해서 합의자가 탈퇴할 때 다른 사람한테 지분을 이전하고 탈퇴하는 그런 형태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팔거나 담보 잡힐 때 다른 공유자들이 거부하면 거부권은 그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서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지분을 인수할 의무를 지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기존의 공유자가 지분을 인수한다는 말씀이지요?

○**주철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면 자기들이라도 인수를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재산권…… 효율적인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면 보류하자는 얘기인데 일단 그 내용은……

○**조승환 위원** 추가로 논의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이 상태로 통과를 시켜 주시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위원님?

○**윤준병 위원** 통과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입법 발의하든지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빼고요?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발의한 분이 이 내용 포함해서 발의를 해 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서는 수용 않는 걸로 일단 처리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재발의하도록 처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 요건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물론 해수부는 동의해 줘서,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식장 신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양식장 관련 자가발전설비라는 게 소수력발전, 인버터, 히트펌프 요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도 표준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존 양식장에 필요하다면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지금 장력이 안 받쳐 주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해수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기존의 소수력발전 설비 지원사업이라든가 히트펌프 설비 지원사업 이 정도 내용 가지고 이미 지원하고 있으니 현행 유지해라라는 기재부에 대해서, 기재부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설득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좀……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위원님,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렸고 위원님이 비슷한 취지로 말씀하셔서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기재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이거는 있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5)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54)
 1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32)
 1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0)
 1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 (11시40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14항까지 이상 5건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현 의원안은 법률의 목적에 낚시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인 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려는 입법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목적 규정은 법률의 핵심 사항을 종합적·포괄적으로 규정해야 하기 때문에 낚시인의 편의 증진이 이 법의 핵심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현행법 목적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의 개념상 일부 중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낚시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로 대상을 넓히는 한편 낚시가 여가활동의 일부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제6조 2항 등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 및 낚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고 낚시인을 지역주민으로 볼 수 없고 낚시 관련 단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낚시 관련 단체의 의미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해 절차의 투명성, 합리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모든 수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 예산·인력 제약으로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 의무화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의무를 재량 규정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서천호 의원안은 갯바위, 방파제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위험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판 및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낚시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현행법 29조에서 낚시어선 승선자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낚시인의 안전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낚시인 안전 관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구역 지정,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과 관련한 사항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수정의견 내용을 보시면 위험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인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의견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제12조제2항은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 횟수를 최대 2회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그 유효기간을 최대 3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과 농어촌정비법상 목적 외 사용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천이나 농업시설에서 낚시업을 하는 경우에는 낚시업에 따른 유효기간을 2회 연장하는 때 총 허가의 유효기간이 최대 15년에 그치게 됩니다.

지난 소위에서 낚시터 허가 유효기간 연장 횟수 제한 관련 현행 규정은 적절한 관리 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한 취지이므로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최대 30년의 범위로 허가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해당 기간 내에서는 연장신청 횟수 제한 없이 낚시터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서 연장 횟수를 2회로 제한한 것은 허가 연장을 최소화하고 낚시터업의 지속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는 구법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 연장신청 횟수가 2회로 제한된 경우에 대해서도 신법에 따라 30년의 범위에서는 연장신청 횟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관련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연접하거나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 시행령 제17조는 낚시어선업자가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법률상 영업구역 내 영업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문대림 의원안은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관할 수역이 아니어도 연접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낚시인을

하선시키는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 연접한 시·도에서 이동해 온 낚시인들의 낚시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 갈등요소가 존재하고 낚시어선의 원거리 영업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시행령에서 영업구역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하위법령으로의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령으로 허용되어 온 기존의 영업구역을 폐지하고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을 선적항을 둔 시·도의 관할수역으로 한정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 시행령 규정은 현재 20년 이상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시 낚시어선업자, 낚시인, 지역어업인 등 이해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 제38조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을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영업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개정안 및 기존의 제1항 영업구역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신설하는 것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는 개정 조문의 명확한 해석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이고, 낚시어선업자의 영업 예측 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관계기관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법령 위임 체계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타 시·도 어선 원거리 운항에 따른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김승수 의원안 제27조의2는 낚시어선업자가 어종별 어획량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낚시 어획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낚시인 및 어업인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반자료로 활용하고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어획량 통계 분석을 위해 낚시어선업자의 성명 및 주소를 낚시어선 승객수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박수현 의원안은 낚시진흥기본계획에 낚시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등 낚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낚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인식하고 낚시산업 진흥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활동과 관련된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낚시여가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낚시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분위기 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낚시인 입장의 접근도 필요하고 여가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 및 수산자원 보호의 경우에 대

해 해수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수 의원안 제55조제1항제23호는 인용조문 오류사항 수정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낚시 수요에 대응하고 환경오염이나 기존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낚시 수요의 확대는 어업인과의 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낚시여가지구의 지정도 기존 어업구역에 대한 영향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낚시여가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특별구역 신청 지자체가 자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고, 수협중앙회는 선상 낚시객의 조업구역 침범 및 남획에 따라 수산자원 고갈, 환경오염 및 어업인 생계 위협이 우려되어 낚시여가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환경부는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고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수면관리자와 지정권자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무역항은 대부분 보안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은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하실 경우에는 명칭을 낚시여가지구로 통일하고 관계부처 의견 제시에 따라 낚시여가지구 지정 시 지정문화유산 등 관련되는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제외 내용이나 수정 내용은 120~122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박수현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승수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험구역 표시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착용에 관한 서천호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변경에 관한 김승수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현행 횡수 제한 규정은 적절한 관리범위 내에 들어오도록 한 취지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 만큼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낚시어선업 영업구역 명확화에 관한 김정호·문대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법제처가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중복된 법령은 일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낚시어선 어획실적 신고 근거 마련에 관한 김승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

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계획에 내용을 추가하는 박수현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낙시여가지구 지정 근거 마련에 관한 박수현 의원님 안은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통제구역 지정 시 실태조사하는 내용 있지요? 6조의3(실태조사).

저는 김승수 의원안이 맞는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되 대신에 구체적인 범위나 시기나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서, 남용되지 않거나 너무 제한적이거나 이런 내용을 정해 가지고 운영해야지. 실태조사를 재량사항으로 해 버리면, 사실상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인데 그 내용이 재량이면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되 실태조사의 시기, 범위,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야 될 내용과 범위는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 자체를 빼고 그냥 재량사항으로, 임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실태조사의 취지에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거는 원안이 맞는 것 같다. 김승수 의원안이 맞는 것 같다, 수정의견보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야야 한다’ 하되 ‘그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 예, 거기에 반영……

○소위원장 조경태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할 이야기가 좀 많을 수도 있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낙시통제구역 실태에 대해서 조사는 돼 있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금 낙시관리법에 따른 낙시통제구역은 현재 150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조승환 위원 150개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하천법에 따른 낙시금지구역은 202개소 그리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낙시금지구역은 142개소……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낙시통제구역이 150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대이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조승환 위원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이 법에 의해서?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조승환 위원 도대체 이 법에 의해서 돼 있는 게 얼마나 되나 해서 지금 확인해 본 건데 저는 법의 실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의견이고요.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위험구역표시 안내판 설치 및 해당 구역에서 낙시하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의무 부과’, 이 부분은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정말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무원들, 시장·군수·구청장들 예를 들어 갯바위낙시 갔다가 물에 빠져 죽으

면 안전난간 설치 안 했으면 전부 감옥 다 가야 돼요, 이거.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고.

안전난간 설치하지 않습니까? 방과제에 안전난간 설치해 놓으면 안전난간이 기준이 돼 가지고 안전난간 바깥으로 나가서 낚시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저는 ‘지정할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장비 착용하여야 한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그러면 낚시위험구역 표시가 아니라 ‘여기 낚시하십시오’라는 표시로 인식될 가능성이 지극히 많아 가지고 오히려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아닌 것 같고.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에 대해서 검토하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제가 계속 했었는데 쪽 알아보니까 하천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속 검토가 된대네요. 그래서 이 법에서는 아마 낚시터업 하는 사람들 위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문 위원님하고 관련 있는데 지금 추자도가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문대림 위원 그렇습니다.

○조승환 위원 추자도가 호남에서 배 타고 와 가지고서 하는 문제인데, 호남 쪽 의견은 들어 보셨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남도에서는 의견이 없었고요.

○조승환 위원 전남도는 의견이 없었고?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예.

○주철현 위원 전남도에서는 수산인들 다 반대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의견이 없으니까……

○문대림 위원 주철현 위원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철현 위원 예, 다 반대예요.

○조승환 위원 그게 제일 문제인데, 문제점만 확인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낚시어선 실적 신고 근거 마련 이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 생각인데 낚시어선 어획실적 신고 근거 마련하고 그다음에 허가 부분, 5년 단위로 2회 제한 있는 그 부분 풀고 하면 대부분 입법취지는 다 발휘되지 않을까 하면서, 의원님들 법안을 보시면 약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큰 의지 없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그렇습니다. 낚시통제구역 설정하는 것도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낚시위험구역에서 안전장구 입으라는, 라이프자켓 입으라는 건 좋은데 오히려 그게 낚시를 유도하게 되고 공무원들한테 과중한 부담만 주게 하는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그 외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생각만 말씀드립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좀 말씀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인데 지금 이 법이 기본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가 엉성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크게 낚시는 내수면 낚시가 있고 해수면 낚시가 있을 텐데 해수면 낚시는 또 거기서 거기잖아요. 내수면 낚시 같으면 자기 소유 저수지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유수면이라든지 하천을 이용한 게 있을 수가 있고, 해수면 낚시 같은 경우는 선상낚시가 있고 갯바위낚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법은 지금 그런 특성에 대해서 개별적인 규제라든지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선상낚시와 관련해서는 낚시어선업 관련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나머지 법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전체 낚시가 레저·관광이 돼야지 이것을 어업으로 취급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과 관련해서 하천이라든지 저수지라든지 또 갯바위 같은 것 전부 다 해양 레저나 육상 레저로 규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선은 지금 현재 선상낚시만 어업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 체제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개정을 도모해야 되고 근본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누더기 옷 입듯이 고치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바닷가 지역구니까 갯바위낚시와 관련해서는 조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험한 지역에 위험표지판을 세우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실상을 알면 이런 법안을 제시를 못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로 배 타고 가서 그냥 절벽과 난간에 매달려 있는데, 보통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낚시꾼들은 거기 가서 뭐 한다고 하고 있고, 물이 잠기는 데도 또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입간판 설치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제가 보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지역에 다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이런 법은 만들면 안 돼요. 이건 무조건 불필요한, 해서는 안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치해 놓게 되면 단체장들이, 사고 나면 시장이나 군수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손해배상책임도 지고 형사상 책임도 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아마 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은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표지판 설치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근본적으로 그걸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위험구역 안 가게 만들어야 돼요, 가게 되면 면허를 박탈하고, 면허제·허가제 그게 필요한 것이지 그렇게 규제하지 않고 지금 재정이 부족한 수많은 지자체들 재정 들여서 그거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도시인들이 다 와서 하고 있는데 비용은 그 지역의 지자체, 시골분들이, 어촌분들이 대야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없는 법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낚시인들에게 안전 교육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허가제 내지 면허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빨리 도입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선 낚시 행위와 관련해서는 어선업에서, 어업에서 제외를 하고

빨리 해양레저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횟수 제한 폐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하천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이 법에서 규정을 두는 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문대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현행과 관련해서 전남 낙시어선들이 제주도 가서 못 하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또 새로운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선 선상낙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시 법을 만들고 레저업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선업으로 해서 낙시어선 선주들이 면세유 쓰는 그거 갖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면세유 못 쓰게 하고 레저업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낙시어선업이 수산지역 수산인들의 가장 큰 민원 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낙시객을 어떻게 좀 해 달라는 게 맨날 듣는 민원인데.

다른 지역은 몰라요. 적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수는 정말 이게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관련해서 어장들이라든지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패류양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너무 분쟁이 많고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또 섬 같은 데 가서 쓰레기 무단 방치하고 와 가지고 치우는 건 다 마을주민들이라든지 지역단체 책임 아닙니까. 어질러 놓고 가게 되면 뒷감당이 안 돼요.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근본적인 낙시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내년 예산에 포괄사업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 좀 하세요. 이미 용역이 돼 있는 줄 아는데 빨리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수면 낙시하고 해상 낙시를 구분해야 되고.

하여튼간 낙시하는 여가 즐기게 보장해 주면 좋은데 관련해서 요즘 오토바이를 타도 면허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낙시 같은 어업도 외국의 선진 사례에 따라서 허가를 주든지 면허를 주든지 하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국가의 의무라고 봐요. 그것이 근본적인 처방이지 안전판 세우고 위험표지판 세우는 게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 낙시어선들이 제주도에 가서 낙시하는 걸 규제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 이해를 반영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까?

○조승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 법의 지금 제일 큰 포인트는 낙시터 하시는 분들 규제 풀어 드리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낙시어선 TAC라도 들어오는 게 이 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해서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논의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철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공청회 때 못 물어봤는데 낙시어선업도 TAC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이라고 한다면 TAC에 당연히 포함돼야지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입니다.

현재로서는 낚시어선들은 TAC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철현 위원** 왜 포함 안 해요, 어업인데?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현재 TAC는 지금 모든 어선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어라든가 꽃게라든가 어획량이 많은 근해 업종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낚시어선들은 주로 10t 미만 연안어선들이다 보니까, 다른 연안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TAC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통해 가지고 TAC를 지금 전체 어선으로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조획량 제한을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3kg 아니면 5kg만 잡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획량 제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승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겠지만 김승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낚시어선 어획실적 신고 근거 마련 이 조항은 하루 빨리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아까 공청회 한 연근해어업 발전에 대한 특별법, 어업법 이게 돼서 낚시어선도 TAC 대상에 포함되면 지금 낚시어선업 선주들이 찬성할 것 같아요? 백이면 백 다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효과가, 거기에 포함시키면 저항이 올 수밖에 없는 법인데 그것 한번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반발은 할 수 있겠지만 연안어선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어업인들이 TAC 제한을 받는데 낚시인들이 제한을 안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원론을 고수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면허제, 허가제 도입하세요. 그거는 겁나서 못 하시잖아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보통 피싱 라이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일정 정도 비용을 내고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 잡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낚시이용권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3kg까지는 무료로 잡고 3kg 초과하는 부분은 돈을 내고 잡고 아니면 주꾸미나 문어같이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수산자원은 돈을 내고 잡도록 하는 낚시이용권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어떤 명칭을 붙였든 간에 비용을 부담하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환경비라든지 안전 비용 이런 것들을 부담하게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땀땀식으로 한 개씩 한 개씩 고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을 좀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어선들이 지금 실태를 보면 TAC 하자고 그러면 찬성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히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하게 되면 엄청난 반발을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할지 그건 잘 고려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민원이 되게 세던데. 낚시터 하시는 업계에서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말들이 많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소위원장 조경태 근데 조승환 위원님도 그렇고 주철현 위원님도 그렇고 계속 반대해 오기 때문에……

○주철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수면 낚시터 관련해서는 그 부분 별도로 우리 해양 관련 법, 수산 관련 법에서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 부분만에 한해서.

○문대림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제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립니다. 네 가지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쟁거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계속 심사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승환 위원 의견들 그러시면 계속 심사하시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민원 들어와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계속 장시간 반대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 정각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8)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가두리양식어업 면허 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심사하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위원정수를 17인으로 2인 늘리고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보상금 산정 시 피해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공정한 손실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손실보상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행법 시행령에서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관여하는 경우는 제척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8조 1항은 보상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양식수산물의 집중 출하에 따른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면허 연장 불허 등의 조치가 있던 당시 가두리양식업의 폐업으로 양식생물이 단기간에 대량·집중 출하되면서 가격 하락에 따른 판매액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피해어업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어가매각 손실액은 입증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제외되었고 21대 국회 심사 시에도 손실액 산정이 어려운 점, 사전 예고기간이 있어 출하를 계속해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때 폐업에 따른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행위와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 및 그 손실액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에 실시한 어류매각 손실액의 보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에서는 일부 자료의 분석결과에서 면허 연장 불허 영향 시기의 추가적 어가 하락 영향 발견,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영향을 도출해 내기도 했으나 내수면가두리 어업면허 연장 불허와 어가 하락 간의 직접적인 인과성 입증 및 가격변동 효과 분석이 곤란하다고 적시되어 있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피해어업인에 대한 보상을 충실히 하려는 취지와 손실액 입증 가능성 및 어가 하락의 원인이 손실 발생에 미친 영향 분석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획재정부는 어류매각 가격 결정 요인은 폐업에 따른 출하량 증가 외에도 생산 원가, 수요량, 자연재해 등 다양하며 내수면가두리양식업 연장 불허에 따른 어가 하락 인과관계도 불명확하므로 어류매각에 따른 손실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피해 어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 추가와 어가 하락으로 인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는 이해됩니다만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어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 위원회에 이미 손실보상 분야 전문가가 포함돼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어류매각 손실액을 보상금에 포함하는 것은 연구용역 결과 가두리 면허 연장 불

허와 어가 하락 간의 인과성 입증에 어렵고 어가 하락이 손실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한 분 부족해서 의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승환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일단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보상을 할 때, 우리가 감척 같은 것 할 때 되면 3년 평균 생산액을 폐업보상을 할 때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보상이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출하할 때 할 수 있는 시기를 90년에서 2004년까지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이 출하 시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조승환 위원 아니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폐업 보상 시에 3년 동안……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보상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보상 항목은 시설물 잔존가액 그리고 종묘 폐기 비용 그리고 시설철거비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가두리양식장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닌가요?

통상적인 3년 보상해 주는 부분은 아주 여러 차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일종의 폐업보상의 원칙 중 하나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런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폐업보상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폐업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미처 대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3년으로 한 거고 이것은……

○조승환 위원 아니, 이것도 양식사업자는 일시 폐업이지.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이것은 일시 폐업이 아니고 면허 연장이 안 된 경우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충분히 대처가 아니고…… 지금 가격 하락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가격 하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3년 보상하는 부분은 폐업보상 기본원칙 중 하나인데 이 법이 계속될 때 이게 아예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유가 뭐가 있나요? 내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야. 기초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폐업을 하게 되면, 장래에 생길 수 있는 수익을 그렇게 대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3년 폐업보상으로? 그런데 이것은 면허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면허 연장은 보상이라고 볼 수가 없지.

폐업보상은 폐업이 될 때 보상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안 된 것 같으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님? 이게 어가 하락분을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인과관계 입증하기가 사실……

어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했다가 슬그머니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연장이 돼. 그러니까 정부의 뜻에 따라서 이것 폐업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한 사람들은 손실을 봤고 좀 버티고 정부정책에, 물 관리, 맑은 물 먹게 하겠다는 이 정책에 일종의 반대했다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좀 버틴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어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것은 폐업보상에 들어가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왜 폐업보상에 안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 의견으로는 면허가 연장이 됐으니까……

아니, 오히려 감척 사업도 똑같이 허가업 면허인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폐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폐업보상금이 안 들어간 거고 이것은 면허 연장이 안 된 사안인데요.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면허 연장이……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면허가 안 된 사안인데 보통 경우에는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이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까지 가서 정부 의견이 맞다 해 가지고 안 된 것을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추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기존 법안에 있었던 걸 추가해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허 연장을 안 해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정치망어업 같은 것도 면허업이잖아. 그렇지요? 정치망어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치망 거두어들이면 면허, 그것도 결국 면허 연장을 안 해 주는 것…… 면허를 취소하는 거나 면허 연장을 안 해 주는 거나 같은 이야기인데, 면허라는 건 다 면허 기간이 설정돼 있는 건데. 그때도 폐업보상 안 해 주나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면허는 갱신이라는 요건들이 다 있어서 그게 기간이 돼도 갱신하는 규정에 따라서 다시 우선순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은 아닙니다.

○**조승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법률적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정치망 면허……

그러면 지금 실장님 이야기를 빌리자면 면허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감척 신청을 해 가지고 정치망을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3년 치 폐업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논리고 면허 기간이 다 차 가지고서 갱신을 안 해 준다, 그것도 그 갱신 사유가 이 사람한테 귀책되는 사유가 아니고 정부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다니까 이 지역을 한려수도 해상공원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갱신을 안 해 줄 때는 폐업보상을 안 해 준다 지금 이런 논리인데, 이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면허 나갈 때 면허 조건으로 그런 게 부과가 돼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물론 부과는 돼 있겠지.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게 생각에 따라서는 폐업보상이 제대로 안 됐더라는 측면의 어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정부정책에 의해서……

물론 면허 기간이 있었고 면허 기간 부과에 갱신 안 해 주는 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미 보상이 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폐업보상 자체를 안 해 준다, 지금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보니까 행정행위상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정부에서…… 그것은 해수부하고는 상관없더라고요. 환경청 때부터 이야기입니다, 이게 환경청 때부터. 환경청 가고 환경부 가고 위임돼 가지고서 지방환경청 가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어민 피해가 발생한 부분들이 내가 보니까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좀 더 해 보는 게, 무작정 법리적인 논리에 의해 가지고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앞으로 더 논의하는 걸로……

○**조승환 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폐업보상을 넣어 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용역까지 추가로 했는데 사실 그 용역 결과도 굉장히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나와서 저희들이 사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는 용역 결과는…… 거기 지금 실장님이 읽는 데는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읽지만 아까 전문위원도 읽으셨잖아. ‘집중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요인이 발견된다’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용역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거고.

나는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대한 것보다 왜 폐업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그때 폐업보상에 대신하는 어떤 다른 부분들이 들어갔었고 그때 언급이 폐업보상을 안 해 주는 대신에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이런 약속이 있었고 이런 것 같으면 나는 안 해 주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은 사실 아무리 면허 갱신이라고 하더라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거기에 가두리양식을…… 업이 면허업이었던 것이지 양식업을 정부정책에 의해서 없애 버리는 건데 이게 왜 폐업보상이 되지 않았을까……

됐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예, 충분합니다.

○**조승환 위원** 시간 충분히 끝났습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예.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두 분 계시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나중에 통과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보류를 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제 생각은 보상금을 줄 수 있으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건데 지금 이 보상금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 규정이, 지금 규정 나와 있는 것도 사실 보면 아주 정확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사실 저는 의문스러운 게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고 현재에서도 판정이 난 걸 또 국회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좀 문제예요. 그렇지요? 이미 대법원 판결 나고 현재에서 판결 난 걸 가지고 다시 시시비비를 붙게 만들어서 또 희망고문 비슷하게 말이지요, 시키는 것 자체가……

○**조승환 위원** 아니, 판결에도 입법으로 해결해라라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아, 현재에서도 그렇게 낫습니까?

○조승환 위원 현재 건은 잘 모르겠는데 대법원 판결에 보면 이게 입법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다……

○소위원장 조경태 현재에서도……

○조승환 위원 법률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쥐도 된다. 안 쥐도 되는데 면허 기간이 다 도과해서 거기에 부관이 붙어 있었고 하니까 보상하는 범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기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 보면 면허까지가 딱 되면 거기까지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책임성 있게 탁 빠져 나가고 하는 게 맞지 면허 연장 안 됐다 해가지고 보상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관념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또 나왔으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한 분 더 오시면 이것은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맨 끝에 보면, 조문에 보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어류매각 손실액이거든요. 어류매각 손실액인데 이것은 참 잡기가 힘들 거예요.

○소위원장 조경태 예, 알겠습니다.

○조승환 위원 잡기가 힘들 건데 제가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게 폐업보상을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하고 털어 버리자, 돈이 얼마나 될지는……

○소위원장 조경태 디테일한 것은 해수부가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들 일단 이 부분은 한 분 더 오시면 그때 통과시키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피해 어업인 단체 추천 전문가 1인을 포함하는 것이 이 개정안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승환 위원 저는 그것은 넣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넣을 필요 없다네, 빼고……

다음으로 의사일정……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위원장님, 혹시 여건 되면……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입니다.

약간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조경태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아까 조승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3년 평균 생산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상에 이 보상액의 종류가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시설잔존가치 그다음에 종묘폐기비용 그다음에 철거비인데요.

일종의 종묘폐기비용 안에, 실은 우리가 연장 불허를 4년에 걸쳐서 시간차 두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종묘폐기비용은 일종의 판 금액 내지 또 그 사업의 생산량,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폐업 보상금이 왜 없는가 부분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법상에는 지금 명확하게 보상금 종류가 이렇게 원가 손실액이 아닌 종묘폐기비용, 시설잔존가액, 시설철거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면 되겠지요?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예.

○소위원장 조경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14시24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9항까지 이상 4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짧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41페이지입니다.

어촌계장의 임기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근거에 관련하여서 지난 2025년 7월 29일에 법안심사소위 1차 회의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논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체계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랑 다른 직책 대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어촌계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촌계장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은 어촌계장의 지위 및 기능이 불명확하고 법률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제도 전반의 역할 정립이 우선된 후에, 임기 규정에 대한 논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어촌계장 활동을 보조하고 어촌계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별수협정관에 따라서 어촌계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고 임기는 어촌계정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나 행정 기여도, 조직 개방성, 재정 소요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임기·연임은 어촌계의 자율적 조직이라는 성격 그리고 어촌계장의 권한과 임기 제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부처 의견으로는 기획재정부는 어촌계는 어촌마을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인가권자이므로 수당 지급도 관할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 개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우선출자 발행·모집에 대해서는 위임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만 매입소각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에서도 이에 대해 법령정비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양수 의원안은 수협 임원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직무상 또는 의례적 행위의 범위에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할 때 수협 임원선거에서도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에 관한 위성곤 의원님 안은 지난 7월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어촌계의 기능과 주요 사업 및 어촌계장의 주요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에 따라서 내년도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계장 활동비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계장 임기 4년 규정에 관한 문금주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어촌계가 지구별수협 산하의 자발적 조직임을 감안해서 임기 관련 사항은 기존대로 해수부 고시인 어촌계정관(예)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출자 매입소각에 관한 하위 법령 위임 근거를 명시한 윤준병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수협 임원선거 시 화환·화분 제공을 허용하는 이양수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것도 한 분이 더 오셔야지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14시28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박재활용법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1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입법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재활용에서 발생하는 환경이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사고 및 상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동 협약은 2025년 6월 26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 협약의 가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2025년 6월 2일 선박재활용협약 가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동 가입동의안은 2025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보시면 향후 협약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새로 건조되는 선박 및 유럽 지역에 기항하는 선박은 선박재활용협약 의무사항은 이미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협약 내용의 국내 적용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총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심사 시에는 먼저 국내법과의 관계 측면에서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하여 양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률안의 구성 측면에서 선박재활용 관련 절차가 제2장과 제3장에 혼재되어 있어 이해가 용이하도록 조문 체계와 순서를 일부 정비할 필요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 조문자료를 준비하여 별도로 자리에 두었으니 심사 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칙에 관련해서는 안 제7조에서 유해물질 등의 설치·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그리고 안 제8조제3항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점 등은 수정·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법률의 제명을 선박재활용법으로 하고 그리고 관련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명과 관련해서 선박재활용이라는 제명은 선박재활용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데 제정안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그 적용 범위는 제3조에 있습니다—이를 고려한 제명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하여 목적 조항에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의 시행을 위함임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관련해서 안 제2호 ‘신조선’과 안 제3호 ‘현존선’ 용어는 본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현존선만 부칙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고, 안 제6호의 ‘유해물질’은 유형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해물질 정의에서 이미 대통령령에 위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7조에서 규제 대상 유해물질을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안 5호의 ‘선박소유자’ 정의는 선원법과 동일하게 수정하고 안 13호의 ‘유조선’ 정의에서 ‘산적운반’이라는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자 병기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의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선박과 그 선박을 재활용하려는 선박재활용시설에 적용하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00t 이상의 외국선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있고 군함, 비상업적 목적의 국가·지자체 소유 선박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 수습을 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도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정안은 국제항해 선박을 500t 이상으로 하고 있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선박에 대해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중 안 제25조는 외국선박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규정에서 삭제하고 외국선박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규정만을 열거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제정안 중 국가·지자체 소유 선박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과 관련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도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유해물질 수거·처리 등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국제협약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국제협약을 우선 적용하되 제정안이 더 강화된 기준을 두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도록 하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협약과의 관계 및 국가의 책무 규정은 필요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를 좀 더 구체화하고 약칭 반영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선박의 유해물질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유해물질 규제, 유해물질 목록 작성·검인·관리·비치, 선박에 대한 정기·임시·최종검사, 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의 발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2장은 선박의 유해물질 관리 및 선박재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3장은 선박재활용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율 내용에 따라 유해물질 관리와 선박재활용을 구분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안 제2장 중 제9조, 제12조, 제15조는 관련 규정이 있는 제3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물질 관리에 관련하여 제정안은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검사 등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안 제10조는 조문만으로는 정기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검사 항목이나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사증서 등 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안 제13조제5항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기산하는 기준 및 방법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기산 기준과 방법을 단지 4항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전체 개별항에서 부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는 국제협약 당사국 간 증서 발

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가 외국정부로부터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외국정부에 직접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안 14조제1항 규정에서 공관을 경유하도록 하는 규정은 제외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중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선박재활용을 위한 준비, 재활용 전 선박검사 및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 발급, 선박재활용의 시작 및 완료 통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갱신·취소,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3장의 장명을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재활용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장명을 '선박재활용'으로 수정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에 관련된 안 제2장 중 제9조·12조·15조를 제3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선박재활용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다음에 위치시키는 게 조문 체계와 그 절차의 순서상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9조 2항은 선박재활용 시 선박소유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내용인 세부 사항의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검사와 관련해서 안 제12조는 선박재활용 시작 전에 선박소유자가 검사를 받고 국제선박재활용준비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 '최종검사'라는 명칭은 선박재활용을 위한 사전 준비검사라는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재활용 준비검사'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안 15조는 선박재활용 시작과 완료를 해수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정 전반을 적시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아래쪽에 통지기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선박재활용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완료된 경우 통지하는 규정은 단계별로 계속 통지하는 걸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 재활용이 완료된 때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은 내용상 필요한 규정입니다만 규제적 성격의 인증은 법률에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내용은 벌칙과도 관련이 있는바 제정안은 재활용 대상 선박과 인증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 환경보호 준수 등 핵심 인증 기준은 일부를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안 제16조제6항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서 갱신을 위한 현장조사와 시정명령에 관한 것으로 안 17조로 이동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검토사항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안 19조는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시 선박소유자에게도 승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서는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제정안의 선박재활용계획 승인을 해양환경관리법 규정과 유사하게 해양경찰청장이 하도록 수정해 달라는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박재활용계획 승인과 선박해체 신고 간 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박재활용계획 승인 시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에 따른 선박해체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은 아래의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는 출입검사, 항만국통제 그리고 보고의무 등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감독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출입검사 등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출입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선박해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5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선박재활용계획 승인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될 경우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소관 사항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항만국통제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항만국통제에 대해서는 왼쪽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관한 안 22조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 시 선박의 결함이 지적되지 않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출항정지 명령을 받은 대한민국 선박에 대해 해당 사실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 의무 등에 관한 제23조는 선박소유자나 선박재활용업자로 하여금 유해물질 등 정보와 선박재활용 실시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수정의견으로는 제정안 내 다른 규정들과의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7페이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부칙에 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선박 검사 등의 대행, 외국정부 등이 행한 검사 등의 인정,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조사,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검사 등의 대행에 관련한 안 제24조는 검사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앞에서 선박재활용계획 승인 권한을 해양경찰청장에게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5조는 외국 국적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를 받은 경우 다시 동일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권한의 위임·위탁 관련 안 제28조에 있어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위임 근거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는 벌칙, 양벌규정, 외국인에 대한 벌칙 적용의 특례와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9조는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행위가 벌칙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동시에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 제재 방지를 위해서 벌칙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과태료에 관한 입법례는 선박평형수 관리법, 어선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은 선박재활용시설 및 선박재활용계획의 거짓 인증 및 거짓 승인의 경우에만 벌칙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지만 미승인 또는 미인증의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과태료와 관련해서 안 제32조 중 선박 검사는 받았으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아 외국항에서 출항정지를 받은 선박소유자에게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외국항에서 이미 출항정지 등의 제재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유해물질목록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선박 미비치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시행일, 현존선에 대한 경과조치, 유해물질목록 확인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일과 관련해서 제정안은 선박재활용협약의 발효일인 2025년 6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 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현존선에 관한 경과조치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법 시행 전에 운항 중인 선박에 대해 즉각적인 의무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협약 발효 후 5년 안에 유해물질목록 보유, 정기검사 수검 등을 이행하고, 2030년 6월 26일 이전에 재활용되는 경우 재활용 전까지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전체에서 현존선에 대해서는 용어가 단 한 차례, 여기 부칙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용어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의에서 이걸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칙에서 더 정확하게 규정해 주는 게 이해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부칙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 유해물질목록의 확인 관련 제정안은 법 시행 이전에 국제협약에 따라 유해물질 목록의 검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조 제목에 ‘경과조치’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유해물질목록 검인 후 적합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이 법에 따른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법률 개정에 관한 조문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에 본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부칙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제가 협약을 다 읽어본 것도 아니고 이 법안을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 본 바도 아닙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 협약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법률인데 사실 이 법의 목적은 선박 내부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을 관리하고 결국 최종 해체는 주로 방글라데시나 인도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해양환경관리법상의 선박해체에 관한 규정을 여기에 너무 이렇게 엮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오히려 법해석이나 체계에 좀 혼돈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원안에는, 아마도 국제협약이 이렇게 기재돼 있겠지요. 168페이지인가 169페이지입니다. ‘장비가 해체되거나 예인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그래서 전문위원은 우리 선박법상 이것도 선박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내용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신데…… 이 홍콩협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 7~8년 이상 걸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서 7~8년 이상 할 때 협약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그런다면 이 조항이 어디엔가 적용이 필요해서 넣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염려가 좀 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금 이것을 가지고 제가 반대를, 법안을 잡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170페이지에 용선자 이런 부분들도 과연 어떨까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해수부장관 권한을, 이것은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법인데 해경청장한테 보내 가지고 국내에서 선박 해체, 유조선 해체에 사용되는 이것을 해경청에서 맡는 게

맞겠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고, 협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건수가 많지도 않을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법 시행 이후에라도 좀 치밀하게 검토하고 또 법 개정 사항이 있으면 빨리 국회에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윤 위원님.

○윤준병 위원 저도 조승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재활용 계획 승인을 해경청장한테 이렇게 위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해수부장관이 선박의 재사용 승인 권한을 해경청장한테, 업무 자체를 그쪽으로 전환하는 근거와 충분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먼저 조승환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국제협약 체결을 기반으로 작성한 법률안이지만 일부 조문 내용이 검토 과정에서 협약 처분 내용과 100%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조문이나 순서 등이 조금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안의 짜임과 완성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되짚어 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해양경찰청장이 선박해체 승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조선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해양관리법에 선박해체에 관한 신고를 해양경찰청에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적용 대상 선종이 다르지만 해경이 기존 선박해체 신고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해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선박해체 시설에 관한 승인을 해양경찰청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윤준병 위원 신고라고 하는 내용하고 승인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서, 예를 들면 신고는 신고 자체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사실관계의 내용에서 내가 그것 성격은 모르겠는데, 해체 계획의 승인은 단순히 위해요소가 있는지 여부, 내용도 그렇지만 꽤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또는 점검해야 될 기준과 원칙과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예, 현행 선박을 해체하고자 할 때는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 자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작업 7일 전까지 제출해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윤준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는 신고 목적이 안전을 위해서, 그 자체 선박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는 그것 하는 과정에 위해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선박 해체 과정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위험물질이 유출될 수 있거나 뭐 이런 내용이 있을 텐데 위험물질이 유출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환경 훼손을 유발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그건 해경에다 맡길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해체 승인과 관련된, 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어떤 취지로 이것 담으려고 하나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단순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승인도 그쪽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해경청장한테 신고하는 내용은 그와 유사한 내용이 주변 안전사고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고 대비해라 하는 취지의 신고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것처럼 계획 자체를 승인할 때는 계획 자체 내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점검될 수도 있을 텐데……

○소위원장 조경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윤 위원님 도움되시려면……

해수부는 주로 보면 해양·수산·항만 쪽 관리를 하고요. 해양경찰청 내에 해양정비창이 있습니다. 선박을 실질적으로 수리하고 또 이걸 만지는 것은 해경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정비창이 해경 소속이지요. 맞지요?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해양정비창이 지금 부산의 다대포에 하나 있고 또 지금 어디에 하나 만들고 있지요? 2해양정비창을 어디 만들고 있습니까? 목포입니까?

○조승환 위원 맞습니다. 그 근처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걸 왜 대답을 못 하셔?

○조승환 위원 해경정비창.

○소위원장 조경태 보통 해양정비창이라고 하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경정비창……

○소위원장 조경태 해경정비창이, 보통 보면 선박 같은 경우를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수리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양수산부는 보니까 선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선박의 전문성은 해경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윤준병 위원 맞나요?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경 직무범위에 유조선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선박 내 오염물질의 사전 제거라든가 대응계획에 관한 검토까지도 같이 하기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그게 해경에서 하지 해양수산부는 그걸 담당하는 부처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집행업무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고 저희가 재활용계획 승인도 그 연장선상에서 해경이 하는 걸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승환 위원 제 생각으로는 협약 이행이니까 통과시켜 주시고 그것은, 지금 제가 이것 파고들어 가면 문제점 지적해 낼 수 있어.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야. 이것은 국제협약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간의 관계에 관련된 규정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내 선박을 해체하고 기름 제거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것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바쁘다고 그러니까 해 보고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한말씀드리자면 선박에 대한 전문성이 해경이 더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현장에서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해경청이 총괄해서 지휘

하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선박을 하는 부처가 있나요? 없잖아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저희들이 선박을……

○소위원장 조경태 다른 부처에 있습니까?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아닙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해경정비창이 훨씬 더 전문성이 있지. 그렇지요?

○조승환 위원 위원장님, 해경정비창은 해경 자기 배 수리하는 데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어쨌든 선박에 대한 부분은 해양수산부가 다루기에는 전문성 면에서……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선박에 대한 설계기준부터 시작해 가지고 선박운용까지 모든 부분을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윤준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만 봐서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 주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다만 빠진 부분인 조선이 산자부에 있는 그것밖에 없고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일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경청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해양수산부가 빨리 조선산업을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달라고 하라고.

○윤준병 위원 이렇게 봐서는 재활용하기 전에 승인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해경청에서 하는 게 맞는지 여전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일단 법은 빨리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고 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다시 또 수정·보완해서 개정안을 만들어 내면 되니까. 그렇지요? 이걸 빨리 통과시켜 주는 게 조승환 위원님, 맞겠지요, 이 법은?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협약이 비준 동의를 했으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뒷받침하는 법률안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승환 위원 예.

1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7)

17.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3)

18.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0)

19.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0)

20. 선박재활용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4)

(14시58분)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 숫자가 조금 부족해서 의결하지 못한 내용부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

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및 제17항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주철현 위원 잠깐만요.

어촌계장 활동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조경태 그것 안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조승환 위원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용역을 하고 추후에 하는 걸로……

○소위원장 조경태 용역하고 있답니다. 용역 결과 이후에 하는 걸로……

○주철현 위원 임기 규정도 마찬가지로요?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철현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선박재활용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0)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1항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34페이지입니다.

심사 경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에서는 2025년 11월 27일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진술인들이 해운 탈탄소 규제 강화 대응과 미래 친환경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정책적·재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들이 다 있었구요.

제일 마지막에 진술인이 다만 항만 전력공급 인프라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 녹색해운항로에서 전기추진선 실증 시 안전검사·항로승인 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보완을 요청하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국내 시범사업 추진과 금융지원 설계 등 제도·재정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전력추진선 중심의 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안전기준 마련과 금융 레버리지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리고 향후 다양한 무탄소선박 보급전략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 용어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타

법률과의 적용 관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정의 관련해서 안 제2조제1호는 그린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 중 무탄소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수소와 암모니아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만이 그린 선박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건조가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린 메탄올이나 전기에너지 등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또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그린 선박의 범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환경친화적 항만을 재생에너지 사용 설비로 가동되는 항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재생에너지 사용 설비만으로 가동이 가능한 국내 항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일부 항만은 수소나 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도 포함되고 있어서 이를 재생에너지에 제한하기보다는 좀 적용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씀드린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지원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된 보완 요청사항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로 항만 전력공급 인프라, 두 번째로 전기추진선 실증 시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 지원(제7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는 화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해각서 체결 주체에 해운법상 화주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지원협의체와 관련해서 제정안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관련 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사 위원회를 활용하여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의 유사 위원회는 규모가 크고 기능 범위가 광범위해서 녹색해운항로와 관련된 사업 발굴, 제도개선, 이해관계자 조정 등 특화된 현안을 전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전문가 중심 구성으로 녹색해운항로 지원협의체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원협의체의 설치를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책 추진 상황, 필요성,

행정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린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조문자료, 수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과 관련하여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재정·금융 지원, 조세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이러한 특별지원을 통해서 관련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와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구장 표시 쪽에 현재 입법례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대규모 특정 국가사업에 도입되어 있고 이외에는 우선 추진 또는 신속 추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입법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항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사 사례로의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세감면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세법에 따른 세제지원은 개별 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은 관련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개별 법에 규정 시 지방세특례 운영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조문 중에 12조 예타 면제 특례와 제14조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먼저 예타 면제 특례는 대규모 특정 국가사업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항만인프라 구축이나 녹색선박 건조지원 사업들은 항만은 항만법에서 녹색선박 건조지원은 친환경선박법 등에서 개별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서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서 이 두 조항들은 규정의 실익이 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대림 위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정부 측 입장 받아들이고요, 아까 예타하고 조세감면 부분은 받아들이고요.

다만 3조,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해서 이게 저탄소·무탄소, 여기서 저탄소의 개념이 LNG 중심을 얘기하는 건가요?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지금 IMO가 2050 넷제로 목표를 정해 놓고 가고 있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생산한 암모니아, 수소 등의 무탄소 연료도 있지만 기존 화석연료보다 탄소가 적은 LNG를 포함한 저탄소 연료도 포함해서……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IMO는 LNG 연료를 인정한다는 겁니까? 이게 중유 대비 얼마나 줄일 수 있다는 거지요, LNG 연료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오늘 제가 퍼센트를 정확하게 기억 못 하지만 현재……

○조승환 위원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LNG는. 한 20% 나옵니다.

○문대림 위원 20%요?

○조승환 위원 예.

○해양수산부해사안전국장 최성용 과정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 넷제로 상태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 연료들은 다 저탄소로 분류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희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하는 것 우리 정치권에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에 예타 면제시켜 가지고 지금 하는데 2029년도에 한다는 게 또 6년 딜레이됐거든요. 2035년에 한다는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5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정해 놔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것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산에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큰 규모의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심정으로 가야만 우리가 혹시나 하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가덕도신공항은요 대표적인 연약지반이거든요. 저게 언제 완공될지 모릅니다. 최근에 제가 그쪽을 좀 더 깊숙이 보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연약 점토질 같은 경우에는 1차 침하, 2차 침하가 있는데 2차 침하는 고려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타 면제 부분은 정부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고 또 문대림 위원님께서 흔쾌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01)

(15시0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게 관리가 가능한 구역과 시간을 정하여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행법은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백사장을 포함한 해수욕장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꽃불놀이 허용구역과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 증진 그리고 집중 단속의 가능성이 만들어져 법 집행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안이유 취지와 달리 백사장 이외의 구역에서만 꽃불놀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허용 장소·시간 외에 해수욕장에서 꽃불놀이를 금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정의상 백사장은 해수욕장 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고 백사장과 같은 시설 중 일부에 대해 꽃불놀이를 허용하려는 취지이므로 ‘구역’을 ‘장소’로 변경하여 조례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 표와 조문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4)

(15시12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제23항 문금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6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현재 국립수산물과학원 해조류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현행법 10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돼 있지만 현행 체계만으로는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런 연구개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김산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안에서 규정한 공사는 자본금 규정이 없고 수행 업무가 비영리적인 성격이 대부분이어서 규모와 업무 및 채원 조달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는 형태와 법률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김산업 육성을 위한 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2개의 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과 병합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첫 번째, 김산업만을 위한 별도의 공사 설립 시에는 타 수산품목에 대한 지원정책 및 제도 운영도 함께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수산물과학원이나 현재 지정돼 있는 전문기관과의 관계에서 업무의 중복 등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벌칙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이를 통해 비밀보호의무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정보가 산업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에 관련한 개정안은 공사에 대하여 국가가 법률로 부여한 공적 권위와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정안은 공사가 설립되면 필요한 규정으로 보이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안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박지원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 등이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액해 주셔서 가지고 내년에 김산업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의원님들 법 발의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내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0)

2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7)

(15시1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및 제25항 조경태 의원, 서천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8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고, 서천호 의원안은 시·도지사가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였음에도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서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한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도 일부 규정되어 있는데 서천호 의원안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면서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재차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해양폐기물 수거 관련 제29조제1항제3호 현행법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상호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안은 관련 규정의 중복 이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대상을 동일 지위의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시·도지사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양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 관련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천호 위원님께서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호 위원 지금 현행법을 보면 차단조치에 대한 부분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

데 실제 현장은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홍수로 인해서 방류가 많이 되면 차단조치는 사실상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데 대해서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할 거냐, 이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차단조치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행법에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등 필요한 조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1조에 보면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관한 부분만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 피해는 어디냐 하면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입니다.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이 침적도 되고 또 해안에, 연안에 쌓여서 실제로 조업을 방해한다든지 심지어 어선이 출항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고.

그래서 차단조치에 관한 부분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차단 조치를 뚫고 나와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현행법으로도 어느 정도 중복 규정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실상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조문을 검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조문의 내용을 보시면 ‘유출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11조에 되어 있고요. 1항에도 그렇고 2항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조치는 그러한 필요한 조치 중의 하나로 언급이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아니, 차단조치 부분은 돼 있는데 차단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수거라든지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29조로 넘어가면, 29조는 보칙이지요? 29조에 1항을 보면 죽죽죽 해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호에 보면 차단조치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김재철 3호에 보시면 ‘12조부터 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가 언급돼 있고요. 제7호에 보면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이렇게 조치들이 있어서……

○서천호 위원 7호 내용으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해양보전과장 안용운입니다.

차단시설을 통해서 넘어온 해양쓰레기는 결국 해안가 쓰레기나 부유 쓰레기가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해안가 쓰레기는 제12조가 되고 부유 쓰레기는 13조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해양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7호에 의해 처리에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집중호우나 재난 시에 흘러온 재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으로 해서 100% 국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현행법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고?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실제 저희 재난 쓰레기 대응사업 20억 예산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유입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비 100% 국비 지원되었습니다. 사천에 7억하고 경남도 전체에 13억 지원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지자체에서도 부담합니까?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행안부 복구계획에 의해서 재난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지자체 부담 없이 국비 전액 100%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보통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재난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균특예산과 취약해안 사업으로 해서 50% 국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재난의 기준이 뭐지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장 안용운 행안부 복구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보통 보면 비가 많이 올 때는 재난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차관님 오셨네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재난 관련 법령도 있고 또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다 규정이 돼 있어서 재해인지는 관련 규정 해석에 따라서 명확히 적용 여부가 정해지고요.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에 따라서 국비로 지원된다는 말씀 드리고, 평상시에 수거하는 것은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50% 지원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자체가 평상시에 재난이라고 인식이 안 되고…… 평상시에도 보면 육지에서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비가 좀 많이 오고 할 때.

내가 경북 영덕에 가니까 영덕군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 하는데……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 이슈는 사실은 어제오늘 이슈가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 주신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비 증액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재정 당국 추가 설득이 필요한 사정이구요.

○소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이 법을 좀 명확하게 해서 중앙정부가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예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말씀이나 서천호 의원님 개정안 취지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왜 이런 개정안을 발의하셨는지 제가 충분히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주신 안을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

를 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규정상으로도 충분히 다 돼 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소위원장 조경태 안 돼 있어요. 현장 가면 안 그렇다니까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그걸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할 만큼 주느냐 하는 이것은 정책과 예산편성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적극 더 노력을 해서……

○소위원장 조경태 안 돼요. 행안부는 인색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정부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요. 주로 해안가에 있는 지역에 해양쓰레기가 항상 많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좀 더…… 해수부 말고요.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발의했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 취지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것은 행안부보다는 재정 당국,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는 그런……

○소위원장 조경태 여기서 주는 중앙정부라면 행안부가 됩니까, 기재부가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여기서는 해양수산부가 될 거고요.

○소위원장 조경태 지자체 위에 해양수산부가 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저희 예산으로 지자체에 주는 부분이니까…… 다만 아까 행안부 얘기가 나온 것은 재해의 경우에는 재해 관련 총괄기관이 행안부이고 재난 복구 지원 같은 것에 대한 규정 총괄을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경태 보십시오, 차관님. 보통 해안가 근처에는, 서천호 위원님 지역도 그렇고 영덕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렇고 보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20%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해양쓰레기가 육지에서 내려오는데 이걸 5 대 5로 매칭해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장님, 해안가 쓰레기의 처리는 법령상 지자체의 책무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해양쓰레기가 그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같으면 되는데 육지에서 과도하게 내려오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되게 억울한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현행법 제11조, 12조, 13조를 보시면 그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소위원장 조경태 차단이 안 된다니까요, 차단이.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아니요,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고요. 그것에 따른……

○소위원장 조경태 일단은 이 법을 통과시킬 테니까 법안을 꼼꼼히 보시고…… 그 취지는 아시겠지요? 지자체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하게 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서천호 위원님 어찌 생각하세요?

○서천호 위원 제가 사실관계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지요? 홍수가 나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밀려 내려왔는데 그때는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제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예, 그렇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상시에 보면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가 아니고 상류에서 나온 쓰레기가 해양으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지자체에서 또 해역을 관할하는 관할 청에서 쓰레기 수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조금은 소홀해도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다와 연안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다 낮아요. 그래서 이 법에다 명시를 해서 재난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도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인데 지금 특별히 폭우가 내렸다는지 댐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급히 방류를 해서 일시적으로 엄청난 양의 해양쓰레기가 해양으로 밀려들었다, 그것은 재난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상시에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상시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그 지역만의 쓰레기가 아니거든요. 여러 개 시군에서 나온 쓰레기가 바다로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 자치단체가 연안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것은 사실상 어찌 보면 국가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규정을 명확히 해서 국가도 부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지금 현행 규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달리 해석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현행법상으로 지금 상시에 지원할 수 있다, 그렇진 않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위원님,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 11조, 12조, 13조, 14조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9조 1항에 따라서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라도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법에 있다. 다만 몇 %를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 당국과 더 노력을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이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천호 위원 지금 상한선으로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실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그래서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이는 데 저희도 노력하겠습니 다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전직 해수부장관님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조승환 위원 지금 법적 근거 부분은 충분히 있는데 제가 이것 히스토리를……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 국가책임으로 가고 싶으면 지방이양사무에서 다시 국가사무로 가져오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저게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 가지고서 한동안은 일체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이 안 되다가 한번 대형홍수가 나 가지고서 시군 단위에서는 지역별로 처리비용이 그 당시에 100억 이상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긴급하게 예산편성 바꿔 가지고서 해 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넘어가서 지금 완전히 50% 하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평상시에 재난급이 아니라도 비가 많이 오면 흘러나오거든요. 흘러나오고 사실 시군구가 누가 책임인지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에 따라 오늘은 예를 들어서 남해에 붙어 있다가 내일은 욕지에 가서 붙는단 말이지요, 조류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욕지는 통영이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바람 불고 조류 바뀌기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형태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두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 법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가책임으로, 국가사무로 갖고 와서 해양환경공단에다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맡기든지 이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계속 지원 근거 만들어서 10%, 20% 더 준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준병 위원 계속 심사하고 다음 하세요.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승환 위원 이것은 법안을 2개 해서 하나 만들어서…… 근거조항 2개 있으면 뭐 어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기재부에다가 이런 것도 국회에서 한 번 더 만들었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

○서천호 위원 제가 보완 입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조경태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서천호 위원 입법을 보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오늘 마칩시다, 회의.

이병진 의원님 안은……

○조승환 위원 이병진 위원님 계신데 이병진 의원님 한 건 해야지.

○소위원장 조경태 이병진 의원님 안이 좀 긴데 좀 짧은 것 할까?

○이병진 위원 이병진 의원 2개 있습니다, 2개. 32번하고 안전법하고.

26.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3)

(15시35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회에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28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3조는 법률 준수를 위한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 등의 포괄적인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법례와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현행법의 입법목적과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의무 규

정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즉 아래 표 내부와 같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관계부처 의견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경우에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 해태 등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자체가 불합리한 책무를 부담하게 되어 입법목적에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4조의2는 항만안전 관련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항만하역 현장에서 항만안전과 관련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요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사항에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29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6조 3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항만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 및 자료 확보를 도모하여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래 음영된 표시를 보시면 항만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항만안전특별법에는 사업주에게 보고 의무가 없어서 관례적으로 해양수산부 상황실 또는 해당 관할 항만점검관에게 통보하고 있는 게 현행 체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 보고의무 위반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의 보고의무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벌 조항을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이중보고의무와 이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체 없이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협조를 통해 사고발생 상황을 공유받을 수 있는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항만안전협의체에서 안전관리체계 운영 및 관리, 안전조치 등을 협의하도록 돼 있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전달하는 체계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안전교육 실시 결과 및 시정조치 이행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항만안전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보의 공개를 의무 규정으로 하려는 개정안 제10조는 행정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

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그리고 항만재해 관련 실태조사 신설과 관련해서 안 제4조의2 항만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필요해 보이므로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활용 성격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실태조사의 내용에 항만 안전 관련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은 항만법 제32조, 33조, 38조에 따라 시설장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점검 실시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의견입니다.

실태조사 내용 중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현황은 삭제하고 항만재해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항만안전 실태조사로 구분하며 항만안전 실태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조문 위치는 법률 체계에 맞도록 이동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수정의견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입장 말씀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김성범 정부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병진 위원 이의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국감 때 사고 현황을 보니까 항만공사가 사고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만의 현실을 잘 모르고 고용노동부가 탁상행정의 의견을 냈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문대림 서천호 윤준병 이병진 조경태 조승환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정책기획관 권순욱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출석 진술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대한 공청회

김남일(한국수산자원공단 기획조정실장)

김도훈(부경대학교 교수)

김영철(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

김기성(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에 대한 공청회

이봉주(국립공주대학교 부교수)

박수봉(국립부경대학교 조교수)

고동훈(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